



2026년도 제주농촌융복합산업 예비·신규 인증신청 관련 안내 자료

2026.1.

(사) 제주농업농촌진흥원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 해당 안내자료는 당해연도 농촌융복합산업 혁신거점조성사업의 근거로 마련됨을 안내드립니다.

1-2 26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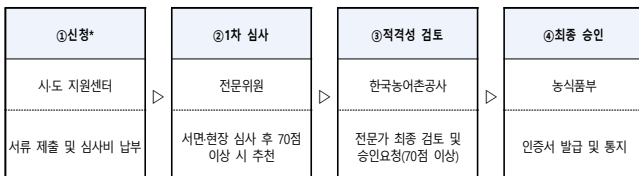
- 26년 변경되는 주요 내용
 - 농촌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경제활동을 농촌융복합산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가칭) 농촌융복합산업+ 도입

□ 농특산물 외의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경제활동*을 농촌융복합산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가칭)농촌융복합산업+ 도입
경제활동: 지역농산물 브랜드 및 온라인 유통, 농촌 빈집활용 위케이션 플랫폼 운영 등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컨설팅·자금·판로 등을 지원하고, 청년·지역창업 등을 지원하는 타 부처 사업* 연계 추진
* 로컬크리에이터(중기부), 청년마을(행안부), RISE(교육부) 등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 비교>

구분	농촌융복합산업	농촌융복합산업+
핵심 자원	■ 지역산 농특산물	■ 농촌 공간, 문화, 식생활, 경관 등 농촌 내 유무형 자원
주체	■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지역 기획자·청년 등
인증 요건	■ 사업장 입지, 주원료 지역산·국내산 농산물 사용 비중, 매출액 등	■ 사업장 입지, 매출액
인증 평가지표	■ 사업계획 수립 적절성, 지역 농업과 연계 활성화 기여 정도, 사업주 융복합 교육 실적 등	■ 농촌 지역자원 연계성·활용도, 지역 기여도, 지속 가능성 등

□ 추진절차



* 특히, 융복합+는 서류심사 전 센터에서 업종, 사업형태 등을 확인하여 접수

1-1 26년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신규 신청 안내사항

□ 추진체계 (추진체계 및 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진행	①예비신규 인증 안내	②컨설팅지원	③인증 접수	④서면현장심사	⑤적격심사 및 인증 공고
1차(상반기)	2.2.(월)~3.31.(화) (접수마감 3.31.(화) 16:00)			4.13.(월)~4.17.(금)	5월~6월
2차(하반기)	7.1.(월)~9.30.(수) (접수마감 9.30.(수) 16:00)			10.12.(월)~10.16.(금)	11월~12월
내용	예비신규 절차접수심사기준 등 안내	예비신규 인증 관련 컨설팅 2회무료	인증 심사비 *자부담입금	접수 경영체 대상 서면현장심사	70점 이상 경영체 적격심사 및 최종 인증 공고

□ 추진체계에 따른 추진내용

- 예비·신규 인증 안내** : 집합 설명회 및 경영체별 방문 안내(제주6차센터)
 - ① 집합 설명회(www.제주6차산업.com 공지사항 참조)
 - ② 경영체별 1:1 설명회(방문)
- 준비서류 등 컨설팅 지원**
(정량·정성) 사업계획서 컨설팅 진행(자부담 없음, 센터 추천 전문위원만 가능)
- 예비·신규 접수** : 방문접수 →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제주시 첨단로 213-65, 2층)
 - *서류검토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오니 방문접수 전, 반드시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 ① 자격요건 충족 할 수 있는 증명서류 반드시 첨부
 - *반드시 자격요건이 충족된 경영체에 한하여 신청접수
 - ② 자부담 입금 : 200,000원 (제주은행 700-100-203278, 사단법인제주농업농촌진흥원)
 - *반드시 업체명의로 이체(ex, 농업회사법인 ABC 일 경우, ABC로 기입)
 - 단, 신규인증 신청시에만 필요(예비 인증의 경우, 자부담 없음)
- 서면·현장심사** : 인증 접수에 따른 현장심사(2인*) 또는 서면심사 (2인*) 실시
 - ① 신규인증 현장심사 : 외부심사 위원 2인(농경제 제2·가공 농업인 마케팅 체험·관광 유통 등)
 - ② 심사기준표(3-3, 3-4, 3-5, 3-6 참조) (70점 이상 경영체를 적격심사에 추천)
 - ③ 단, 예비 인증의 경우 센터 자체심사로 대체
- 적격심사 및 인증공고** :
 - ① 신규 → 농어촌공사(농어촌자원개발원) 사업계획 타당성 등 적격심사 및 농식품부 인증 공고
 - ② 예비 → 농어촌공사(농어촌자원개발원) 최종 적격 확인 및 농식품부(한국농촌공사) 예비인증일 지정

1-3 26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요건

구분	세부내용										
대상주체	■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등										
사업장 입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에 소재 ■ 농촌융복합산업(농유형) : (1차×2차), (1차×3차), (1차×2차×3차) ■ 주원료 사용 관련 증빙 가능 여부										
형태 및 주재료 지역비율 (품목)	- 주원료는 자가생산, 계약재배, 지역매입을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국산)을 사용하고,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 이상으로 하되, 다른 시도와 접해있는 사군의 경우 인접 사군도 동일지역으로 간주 * 지역매입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계산서 등 증빙 확인 * 단, 주원료의 품목 특성 상 지배지역이 한정된 경우 사도 내 조달이 불가능함을 증명(「농작물 생산조사(통계청)」 결과 등) 시, 지역산 의무 사용비율(50%) 적용 예외 가능 * 농산물을 활용한 1차 가공품(과일농축액 등)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가공품 내 지역산 농산물이 50% 이상 사용되었음을 증명 시, 인정 가능 ■ 인증표시가 가능한 주생산품 품목 기재 - 주원료 사용 관련 증빙이 가능한 제품만 인증마크 표시가 가능하며, 주생산품 변경 시 사업자 인증 변경 신청 필요(재인증 시 인증마크 부착 사진 증빙) ■ 농촌융복합산업(농유형) : 1차산업을 포함하지 않은 융복합산업 / (2차), (3차), (2차×3차) - 농촌지역의 자연·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 ※ 예 : *공간 재생형, *미식 연계형, *체험 서비스형, *농촌 창업 지원형 등(향후 신규형 발굴조사 등을 거쳐 유형 지속 추가보완)										
사업성과	■ 최근 2년간 사업성과(매출액)가 있고, 평균 매출액이 '최근 5개년 평균 농가 소득 48백만원' 이상 * 산출 근거 : (20) 45,029천원 (21) 47,759, (22) 46,153, (23) 50,828, (24) 50,597 - 매출액은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손익계산서) 등 증명가능한 서류로 산정 *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동일한 대표자에 주 사업장과 연계한 사업성과(매출액)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액 합산 인정										
기타	■ 서면 및 현장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증빙 - (일자리) 4대보험 신고서류, 일용직 신고서, 임시근로자 근무확인서 등 확인 - (지역농산물) 자가생산 증명서, 계약재배 협약서, 매매계약서 등으로 확인										
'26년 신설	■ 매출 규모에 따라 예비인증, 도약형, 확장형, 선도형으로 구분(현장 검증 등 필수)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예비인증</th> <th>도약형</th> <th>확장형</th> <th>선도형</th> </tr> </thead> <tbody> <tr> <td>매출액*</td> <td>5년 평균 농가소득 (26년 48백만원) 미만</td> <td>5년 평균 농가소득 5억 5천만 이상 5억 1천만 미만</td> <td>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td> <td>30억원 이상</td> </tr> </tbody> </table>	구분	예비인증	도약형	확장형	선도형	매출액*	5년 평균 농가소득 (26년 48백만원) 미만	5년 평균 농가소득 5억 5천만 이상 5억 1천만 미만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구분	예비인증	도약형	확장형	선도형							
매출액*	5년 평균 농가소득 (26년 48백만원) 미만	5년 평균 농가소득 5억 5천만 이상 5억 1천만 미만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 향후 외부요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1-4 26년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신규 심사기준 및 가점표

※예비인증 심사표의 경우, 아래와 같으나「가점」항목만 제외

<'26년 농촌융복합산업 신규·갱신 심사 기준 [농촌융복합산업]>

신규(갱신) 기준		배점
농촌 융복합 산업기반 (40)	(기초 역량) 사업주의 최근 3년간(신청년도 포함)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교육 실적 ※ (중빙)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 및 위탁 교육의 이수증, 수료확인서 등 * 예: 농업교육포털 내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교육 과정	10
	(경영 및 재무관리) 최근 2년간(신청년도 포함) 재무관리, 회계자료 작성의 성실도(재무회계 관리,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작성 여부)	10
	(기반 인프라) 가공시설, 체험장, 직매장 등 시설 구축 및 관리 정도	10
	(지역 농산물) 주원료의 지역농산물 사용 정도(전년도 기준)	10
경쟁력 (20)	사업 계획서의 독자성, 혁신성, 차별성	10
	지역 내 관광자원 및 시설(직매장, 가공시설, 체험장 등)과의 연계 및 활용도	10
지역사회 연계-상생 (20)	지역농업과의 연계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	10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	10
향후 계획 (20)	사업계획 수립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 가능 정도	10
	1차, 2차, 3차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농촌융복합산업 완성도	10
가점 (8)	• (신규) 예비 인증(2), 청년(2), 최근 3년 신상품 개발 및 특허출원(1)	
	• (갱신) 사회공헌(2), 자연친화적 경영(2), 최근 3년 신상품 개발 및 특허출원(1)	
계	108점	

<'26년 농촌융복합산업 신규·갱신 심사 기준 [농촌융복합산업]>

신규(갱신) 기준		배점
농촌 융복합 산업기반 (30)	(경영 및 재무관리) 최근 2년간(신청년도 포함) 재무관리, 회계자료 작성의 성실도(재무회계 관리,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작성 여부)	15
	(기반 인프라) 농촌지역 내 관련 시설 구축 및 관리 정도	15
경쟁력 (20)	사업계획서의 독자성, 독창성, 혁신성, 차별성, 및 수익성 정도	10
	제품서비스와 지역 역사문화 등과의 연계 여부 및 활용도, 확장성, 품질 정도	10
지역사회 연계-상생 (30)	지역 공동체(주민, 단체, 조직)와의 연계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	10
	지역주민 수용성, 참여도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의 지속 가능 정도	10
	지역주민 고용 등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농가 수익지역 기여 등	10
향후 계획 (20)	사업계획 수립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 가능 정도	10
	2차, 3차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농촌융복합산업 완성도 및 타 융복합 산업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정도	10
가점 (10)	• (신규) 청년(2), 최근 3년 신상품 개발 및 특허출원(2), 창업 관련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 대회 입상 실적(3)	
	• (타부처 연계) 최근 3년 내 중기부 창업 관련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3)	
계	110점	

- (지원 혜택) 농촌융복합산업 본 인증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중점 지원, 본 인증 심사 시 가점(2점) 부여 등
- (인증 기간) 3년, 갱신 없음
- * 기 승인된 예비인증자 신규 갱신 불가, 갱신 기간 1년 연장(2년 → 3년)

1-6 농촌융복합산업 사후관리

- (사후관리) 인증사업자의 갱신, 취소 등으로 기존 인증서가 변경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지원센터는 인증서를 즉시 회수 조치하고 인증 번호, 담당자, 일시 등 관련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별도 관리
- 한국농어촌공사 및 지원센터는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 추진 실적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의 조치를
- * 매년 1회 이상 농식품부,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어촌공사, 지원센터 등 합동 점검 실시

<주요 점검 내용>

- (주원료 사용 위반) 주원료 사용 비율(국산 100%, 지역산 50% 이상)은 원산지 단속정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등을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위반 시 인증 취소 및 인증신청 제한(3년간) 등 조치
- (인증 표시 등 위반) 인증사업자가 사업계획에 포함된 주원료로 만든 제품 외 인증 표시(마크) 등을 사용하거나 인증에서 탈락하였음에도 인증표시를 사용할 경우, 계도 기간(3개월)을 부여하고 미 이행시 지자체는 관련기관에 고발 조치

< 가점 부여 기준 >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배점	
예비인증자(2)	•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 사업자	2	
	청년(2)	• 신청 사업자 대표 또는 고용인원 50% 이상의 나이(40세 미만)	2
신규	신상품 개발 및 특허출원(1)	• (기준) 최근 2년간(신청년도 포함) 농산물 가공, 체험 등 농촌융복합산업 신상품 인증(1점), 실적 없음(0점) • (측도) 인증(1점), 실적 없음(0점) • (중빙) 농업기술정보포털에서 발급하는 상품개발 증명서, 특허증, 등록특허증 등	1
	창업 관련 입상 실적 또는 선정 실적(3)	• (기준) 최근 3년 창업 관련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 입상 실적 대상(1위) (3점), 최우수상(2위) (2점), 우수상 등(3위 이하)(1점) • (중빙) 상생 사본, 표창 발급내역서 등	3
	사회공헌(2)	• (기준) 최근 2년간(신청년도 포함) 기부활동 등 • (측도) 신상품 인증(2점), 실적 없음(0점) • (중빙) 기부 영수증 등 증명자료	2
갱신	자연친화적 경영(2)	• (기준) 최근 2년간(신청년도 포함) 자연친화적 경영 • (측도) 신상품 인증(2점), 실적 없음(0점) • (중빙) 농축산물의 친환경 인증, 자연친화적 포장재 사용 내역 등 증명자료	2
	신상품 개발 및 특허출원(1)	• (기준) 최근 2년간(신청년도 포함) 농산물 가공, 체험 등 농촌융복합 신상품 인증(1점), 실적 없음(0점) • (측도) 인증(1점), 실적 없음(0점) • (중빙) 농업기술정보포털에서 발급하는 상품개발 증명서, 특허증, 등록특허증 등	1
타부처	중기부 사업자 선정(3)	• (기준) 최근 3년간 중기부 사업 ①신사업창업사관학교 ②콜크리에이터 사업 ③농업인 능력연계사업 ④청년 창업인 육성사업 ⑤농업인 창업지원, ⑥혁신사업 ⑦농업인 창업지원사업 ⑧농업인 창업 1기 사업자 선정 • (측도) 실적 없음(3점), 실적 없음(0점) • (중빙) 소상공인 24(www.sbi24.kr)에서 확인서 출력	3

1-5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제도

- (목적) 농촌융복합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미인증 경영체를 대상으로 예비 인증제를 확대하여 인증제도 확산 및 내실화 도모
- (요건) 융복합을 영위하는 경영체 중 매출액 기준 외 사업자 인증을 위한 기본 자격*을 충족하는 경영체에게 예비인증자격 부여
- * 대상주체(농업인·농업법인 등), 사업장 입지(농촌 소재) 등
- (예비인증 심사) 지원센터는 요건을 충족하는 미 인증 융복합산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심의(자체 가능) 과정을 거친 후 예비인증자 선정
- (심사 결과 제출) 지원센터는 예비인증심사 결과를 시·도, 시·도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경영체를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자원개발원)에 제출
- (예비인증여부 통지) 한국농어촌공사는 최종 적격자를 확인하고,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는 예비인증일 지정, 시·도 및 지원센터에 예비인증 여부 통지
- * 예비사업자 인증서는 센터가 자체적으로 공문 발송

2-1 [기준유형] 2026 예비 인증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 리스트

연번	<2026 예비 인증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 리스트>	비고
1	인증신청서 + 신규 사업계획서 1부	
2	(대상주체 증빙을 위한 서류)	① 농요인 농장법인 농요인원 생사자료 → 농요인원 증명서 (농산물품질관리원) ② 농업 관련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해당 대상주체에 한함 (택 1)	③ 농업 관련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④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인증서 ⑤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인증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⑥ 1인창조기업 → k-startup 접속 후 확인적성 및 진단서 캡처
3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사업자 특목이 되어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5	(2025년, 2024년, 2023년) (경영 및 재무 관리 실적 및 사업성과 확인을 위한) 재무제표/부가가치세과세표준명세서/결산사업자 수입증명/면세사업자수입증명 등 (국세청 등 국기관에 신고된 자료만 인정. 통장내역, 농업거래내역서* 등) 단 사업장기야방간 경우 동탄대피처 주사실장위탁농업사업자매출액이있는경우에 한하여 매출 환산 인정	
6	*농업·제조·가공·체험 등 농촌융복합산업 사업 관련 내용 명시 필수 정관 또는 조약과 운영에 관한 규정(법인 아닌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7	(2025년) (자가생산 증명을 위한) 자가생산증명서 + 농업인경영체 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 사진 등	
8	(2024년) (계약재매 증명을 위한) 계약재매계약서 또는 계약서 + 농업인경영체 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 거래내역확인서 등	
9	(2023년) (매입증명을 위한) 매입증명서 + 농업인경영체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 거래 내역확인서 등	
10	(사업계획서 작성일 날짜 기준) (정규 근로자 확인을 위한) ①, ② 모두 증빙준비 ①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4대보험 가입자명부 (최근 날짜) ②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사업장용) 25년, 24년	
11	(사업계획서 작성일 날짜 기준) (임시 근로자 확인을 위한) 임시근로자 근로확인서(총괄/월간-서식 참조) 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12	(3년간, 2026년~2028년 사업 경영 및 운영 확보 확인)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 해당자에 한함)	
13	사업계획서 내 특이사항 증명서류 등 - 최근 3년(2026년, 2025년, 2024년) • (정량평가) 교육이수증(중앙지자체 주관 및 위탁교육 이수증, 수료증 등) • 예비인증의 경우, 별도 가점은 없음 • 사업장이 농촌지역 아닐 경우, 사업계획서 내 "3년내 농촌지역 이전 계획" 내용 가립 필수	
14	첨자를 위한 차부담 이체증명서(이체내역서 등) 차부담금 200,000원 (반드시 업체명으 이체) (ex, 농업회사법인 ABC 일 경우, ABC로 가립)	해당 없음
15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유통현황 자료(붙임18~20)	
16	그 밖의 기타서류 (헌문보도 등 객관적 증빙서류)	

2-2 [기존유형] 2026 신규 인증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 리스트

연번	<2026 신규 인증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 리스트>	<비고>
1	인증신청서 + 신규 사업계획서 1부	
2	(대상주체 위빙을 위한 서류) 해당 대상주체에 한함 (택 1) ①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단체 → 농업경영체 증명서(농산물품질관리법) ② 농업 관련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③ 농업 관련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④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인증서 ⑤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인증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⑥ 1인창조기업 → k-startup 접속 후 확인직장 및 진단서 캡처	
3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5	(2025년, 2024년, 2023년) (경영 및 재무 관리 실태 및 사업성과 확인을 위한) 재무제표/부가가치세과세표준명세서/결산사업자 수입증명/면세사업자수입증명 등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신고된 자료만 인정. 통장내역×, 농업거래내역서× 등) 단 사업장이야무인 경우 동행대매장에 주소장표와 연한사(합의)매매장기)는 경우에 한하여매출 확인서 인정	
6	★농업·제조·가공·제조 등 농촌융복합산업 사업 관련 내용 명시 필수 정관 또는 조약과 운영에 관한 규정(법인 아닌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한 경우)	
7	(2025년) (자가생산 증명을 위한) 자가생산증명서 + 농업인경영체 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 사진 등	
8	(2024년) (계약재배 증명을 위한) 계약재배확인서 또는 계약서 + 농업인경영체 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 거래내역확인서 등	
9	(2023년) (매입증명을 위한) 매입증명서 + 농업인경영체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 거래 내역 확인서 등	
10	(사업계획서 작성일 날짜 기준) (정규 근로자 확인을 위한) ①, ② 모두 증명준비 ①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4대보험 가입자명부 (최근날짜) ②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사업장중) 25년, 24년	
11	(사업계획서 작성일 날짜 기준) (임시 근로자 확인을 위한) 임시근로자 근로확인서(총괄/월간-서식 참조) 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12	(3년간, 2026년~2028년 사업 경영 및 운영 확보 확인)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 해당자에 한함)	
13	사업계획서 내 특이사항 증명서류 등 - 최근 3년(2026년, 2025년, 2024년) □ (정량평가) 교육이수증(중앙지자체 주관 및 위탁교육 이수증, 수료증 등) □ (가점2) 예비인증사업자 (원래 예비인증사업자에게만 해당(예비신청서 해당없음)) □ (가점2) 신청 사업자 대표 또는 고용인원 50% 이상의 나이(40세 미만) □ (가점1) 신상품 개발(상품개발 증명서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등) 또는 특허출원(특허증 등) □ (가점3) 최근 2년간 중기부 사업 ①(신사업창업사관학교, ②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로컬 브랜드 창출, ③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④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사업 중 1개 사업자 선정(소상공인 24(www.sbiz24.kr)에서 확인서 출력)	
14	심사를 위한 자부담 이체증명서(이체내역서 등) 자부담금 200,000원 (반드시 업체명의로 이체) (ex, 농업회사법인 ABC 일 경우, ABC로 기입)	
15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유통현황 자료(붙임18~20)	
16	그 밖의 기타서류 (연론보도 등 객관적 증명서류)	

2-3 [신설유형] 2026 농촌융복합산업* 준비서류

연번	<농촌융복합산업* 2026 인증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 리스트>	<비고>
1	인증신청서 + 신규 사업계획서 1부	
2	(대상주체 위빙을 위한 서류) 해당 대상주체에 한함 (택 1) ①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단체 → 농업경영체 증명서(농산물품질관리법) ② 농업 관련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③ 농업 관련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④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인증서 ⑤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인증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⑥ 1인창조기업 → k-startup 접속 후 확인직장 및 진단서 캡처	
3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5	(2025년, 2024년, 2023년) (경영 및 재무 관리 실태 및 사업성과 확인을 위한) 재무제표/부가가치세과세표준명세서/결산사업자 수입증명/면세사업자수입증명 등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신고된 자료만 인정. 통장내역×, 농업거래내역서× 등) 단 사업장이야무인 경우 동행대매장에 주소장표와 연한사(합의)매매장기)는 경우에 한하여매출 확인서 인정	
6	★신설유형에 부합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 관련 내용 명시 필수 정관 또는 조약과 운영에 관한 규정(법인 아닌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한 경우)	
7		
8	(2025년) 실적 증명자료 신설유형에 부합되는 객관적인 증명자료(지역-실적 등) 단, 예외의 경우 아래의 13.(가점) 및 14.자부담금 해당사항 없음	
9		
10	(사업계획서 작성일 날짜 기준) (정규 근로자 확인을 위한) ①, ② 모두 증명준비 ①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4대보험 가입자명부 (최근날짜) ②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사업장중) 25년, 24년	
11	(사업계획서 작성일 날짜 기준) (임시 근로자 확인을 위한) 임시근로자 근로확인서(총괄/월간-서식 참조) 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12	(3년간, 2025년~2027년 사업 경영 및 운영 확보 확인)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 해당자에 한함)	
13	사업계획서 내 특이사항 증명서류 등 - 최근 3년(2026년, 2025년, 2024년) □ (정량평가) 교육이수증(중앙지자체 주관 및 위탁교육 이수증, 수료증 등) □ (가점2) 신청 사업자 대표 또는 고용인원 50% 이상의 나이(40세 미만) □ (가점2) 신상품 개발(상품개발 증명서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등) 또는 특허출원(특허증 등) □ (가점3) 창업 관련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 대회 입상 실적(최근3년, 상장서본 등) □ (가점3) 최근 2년간 중기부 사업 ①(신사업창업사관학교, ②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로컬 브랜드 창출, ③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④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사업 중 1개 사업자 선정(소상공인 24(www.sbiz24.kr)에서 확인서 출력)	
14	심사를 위한 자부담 이체증명서(이체내역서 등) 자부담금 200,000원 (반드시 업체명의로 이체) (ex, 농업회사법인 ABC 일 경우, ABC로 기입)	
15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유통현황 자료(붙임18~20)	
16	그 밖의 기타서류 (연론보도 등 객관적 증명서류)	

3-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신청 관련 서류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2. 8.>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예비 인증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합니다. (양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신청단위 [] 농업인, [] 개인·법인사업자, [] 영농조합, [] 협동조합, [] 농업회사법인, [] 기타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법인인 경우)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유형구분 [] 1×2차형(가공), [] 1×3차형(체형, 직거래 등), [] 1×2×3차형(복합형)
	구분 [] 최초 인증 신청
사업계획	<붙임>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예비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농업경영체 증명서 1부(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인 경우) 4. 법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정관 또는 조약과 운영에 관한 규정(법인 아닌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주원료 증명자료 등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복사지 80g/㎡(재활용품)]

(뒤쪽)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심사 및 지원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대표자 성명 및 생년월일을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 제공하며, 제공받은 기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기간(3년) 동안 보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대표자 성명을 6차산업 홈페이지 및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기간(3년) 동안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심사 및 지원 사업 대상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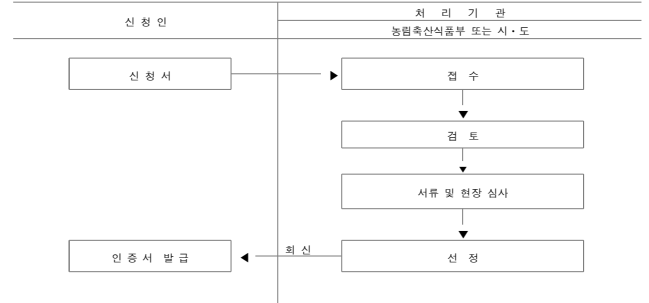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작성 내용의 맞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글자는 검은색으로 쓰고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신청 단위의 인증을 받으려는 주체의 유형에 따라 농업인, 개인·법인 사업자, 영농조합,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기타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주소란에는 신청인 또는 법인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 유형은 제조·가공 중심인 경우 1×2차형(가공형), 체형·관광 및 직거래 유통 중심인 경우 1×3차형(체형, 직거래 등), 제조·가공, 체형·관광, 직거래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1×2×3차형(복합형)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사업계획은 별지 제2호서식(신규)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경신)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서(신규·갱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비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신청단위 [] 농업인, [] 개인·법인사업자, [] 영농조합, [] 협동조합, [] 농협회사법인, [] 기타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법인인 경우)		
주소			

신청내용	유형구분 [] 1×2차형(가공), [] 1×3차형(체협, 직거래 등), [] 1×2×3차형(복합형)
	구분 [] 최초 인증 신청, [] 갱신(유효기간 연장) 신청

사업계획 <붙임>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경영체 증명서 1부(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인 경우) 3.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법인 아닌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간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업계획서(신규)

I. 추진 사업의 명칭 :

II. 사업자 일반 현황(작성일 기준: . . .)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설립일	
연락처		
주소		
업종	자본금	백만원
주원료	주생산품	
매출액 및 고용 현황	■ 총 매출액: 백만원 ■ 농산물 생산(1차): , 농산물 가공(2차): , 농촌 체험·관광(3차): ■ 고용 현황: 총 명 * 유급종사자: 명(상시): 명, 임시: 명 * 무급종사자: 명(가족: 명, 기타: 명)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 :	
사업장 현황	1차	* 자가생산 농장면적: m ² (전답) *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농장면적: m ² (전답)
	2차	* 자가생산 시설면적: m ² (하우스 축사 기타) *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시설면적: m ² (하우스 축사 기타)
	3차	공장면적: m ² (대지 건물) 시설면적: 체험 m ² , 음식점 m ² , 숙박 m ² , 직매장 m ² , 기타 m ² 연간(전년도) 방문객수(체험객수): 명
특이사항		

1) 상시근로자: 1년 이상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대표자 및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계약직을 포함함)
 2) 임시근로자 인원 산출방법: 연간 근무시간 누계 1,920시간(12개월×20일/월×8시간/일)을 1명으로 계산(예시) 10명을 5개월간 월 10일, 일 5시간씩 고용한 경우 연간 근무시간은 2,500시간(10명×5개월×10일/월×5시간/일=2,500시간), 인원으로 환산 시 1.3명(2,500시간/1,920시간=1.3명)
 3) 인·허가, 영부지원 사항 등을 시간의 흐름 순으로 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심사 및 지원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대표자 성명 및 생년월일을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 제공하며, 제공받은 기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기간(3년) 동안 보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대표자 성명을 6차산업 홈페이지 및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기간(3년) 동안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심사 및 지원 사업 대상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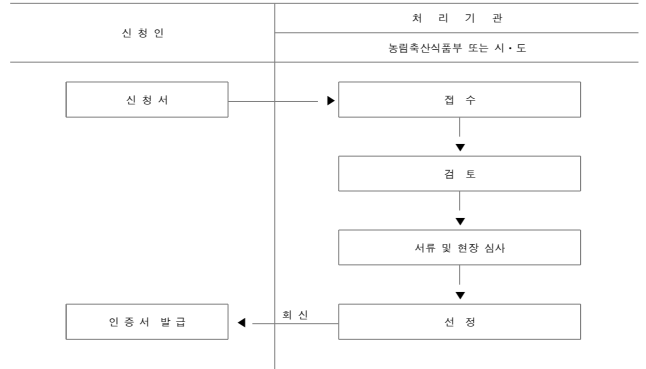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글자는 검은색으로 쓰고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신청 단위의 인증을 받으려는 주체의 유형에 따라 농업인, 개인·법인 사업자, 영농조합, 협동조합, 농협회사법인, 기타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주소란에는 신청인 또는 법인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 유형은 제조·가공 중심인 경우 1×2차형(가공형), 체험·관광 및 직거래 유통 중심인 경우 1×3차형(체협, 직거래 등), 제조·가공, 체험·관광, 직거래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1×2×3차형(복합형)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사업계획은 별지 제2호서식(신규)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갱신)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III.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역량(사업자(사업주)의 농촌융복합산업 기본역량)

①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교육 참가실적(최근 3년간, 신청년도 포함)(26년, 25년, 24년)				
교육명	년/월	장소	주최(주관)기관	참고
② 농산물 가공·체험·요리 등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격증·인증 취득 현황				
자격증/인증명	발급 년/월	발급기관	참고	
③ 농산물 가공·체험·요리 등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신상품개발 증명서, 특허출원 실적				
증명서/특허명	발급 년/월	발급기관	참고	
④ 농촌융복합산업 경진대회·품평회·박람회 등 수상실적(도 단위 이상)(최근 3년간 신청년도 포함)				
행사명	수상등급	주최(주관)기관	참고	

IV.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실적(사업자(사업주)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추진 실적)

① 매출·수출 실적(가공, 체험, 서비스의 재료로 사용되는 농산물 포함)					
구분	매출액(백만원)	수출액(S)	비고(수출국별 수출액)		
2025년(인증신청 전년도)					
2024년(인증신청 전전년도)					
② 고용 현황 (단위: 명)					
구분	총 고용인원	유급종사자		무급종사자	
		상시근로자	임시근로자	가족	기타
2025년(인증신청 전년도)					
2024년(인증신청 전전년도)					

* 상시근로자: 1년 이상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대표자 및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계약직을 포함함)
 * 임시근로자 인원 산출방법: 연간 근무시간 누계 1,920시간(12개월×20일/월×8시간/일)을 1명으로 계산

V. 사업의 개요 및 세부계획(향후 3년간)

사업의 개요 및 추진계획

① 사업의 개요, 기본방향 및 체계, 융복합 형태
② 향후 3년간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의 개요, 기본방향 및 체계, 융복합 형태
사업의 개요, 기본 방향, 추진체계, 농촌융복합산업 형태 기술: 1차·2차·3차 산업 간 연계 형태, 2차·3차 산업과 1차 산업과의 관계, 부가가치 제고 방식

2. 향후 3년간 세부 추진계획
신상품 개발, 제품의 구체적인 판로 확보방안(직매장 활용, 온라인 판매, 체험객 유치 등), 고객 확보 노후, 홍보·마케팅 계획을 통한 매출 증대 등 계획의 독자성, 창의성, 차별성이 드러나도록 기술, 추진사업의 실시 예정 시기 및 기간 포함

지역농업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①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② 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 자원의 연계성

1.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방식
지역주민 고용 계획,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활동(장학금, 마을잔치 등) 계획 등에 대해 기술

2. 지역 내 관광자원, 농촌융복합산업 시설(직매장, 가공시설, 체험장 등) 활용·연계 방안
지역 내 종합가공센터 활용, 체험농가와의 연계, 체험마을의 숙박시설 활용 등에 대해 기술

농산물 확보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
2차 가공, 3차 체험·서비스에 사용되는 1차 농산물의 확보 현황 및 향후 3년간 계획에 대해 기술

<농산물 확보 현황> ※ 전년 기준

품목	총 소요량 (톤)	자가생산	계약재배			매입(농협 등)	
			지역내 농가	지역외 농가	지역내	지역외	
		톤	톤	톤	톤	톤	톤
		%	%	%	%	%	%
		톤	톤	톤	톤	톤	톤
		%	%	%	%	%	%
		톤	톤	톤	톤	톤	톤
		%	%	%	%	%	%

· 지역: 시업장(경영체)이 소재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를 의미하며,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접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접해 있는 시·군(기초지방자치단체)을 포함

<향후 확보 계획> ※ 향후 3년간 연평균
· 해당 업종을 포함한 향후 3년간 총 예상 사용량의 평균량을 기준으로 작성

품목	연평균 소요량 (톤)	자가생산	계약재배		매입(농협 등)	
			지역내 농가	지역외 농가	지역내	지역외
		톤	톤	톤	톤	톤
		%	%	%	%	%
		톤	톤	톤	톤	톤
		%	%	%	%	%
		톤	톤	톤	톤	톤
		%	%	%	%	%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기 타
기타 특이사항 자유 기술

3-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신청 관련 서류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2. 8.>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예비 인증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양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신청단위 [] 농업인, [] 개인·법인사업자, [] 영농조합, [] 협동조합, [] 농업회사법인, [] 기타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법인인 경우)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유형구분 [] 1×2차형(가공), [] 1×3차형(체험, 직거래 등), [v] 1×2×3차형(복합형) (농촌융복합산업*) 구분 [] 최초 인증 신청			
사업계획	<붙임>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예비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신청인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농업경영체 증명서 1부(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인 경우)	수수료 없음
제출서류	4. 법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법인 아닌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주원료 증빙자료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간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심사 및 지원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대표자 성명 및 생년월일을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 제공하며, 제공받은 기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기간(3년) 동안 보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대표자 성명을 6차산업 홈페이지 및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기간(3년) 동안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할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심사 및 지원 사업 대상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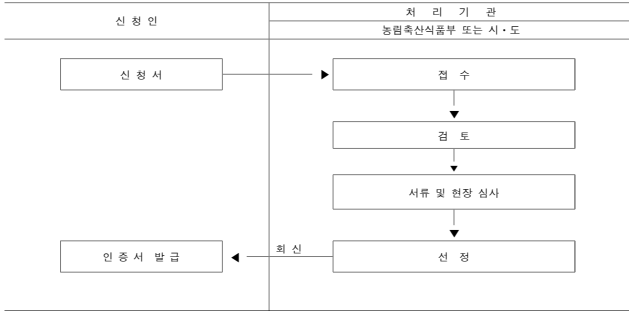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글자는 검은색으로 쓰고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신청 단위는 인증을 받으려는 주체의 유형에 따라 농업인, 개인·법인 사업자, 영농조합,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기타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주소란에는 신청인 또는 법인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 유형은 제조·가공 중심인 경우 1×2차형(가공형), 체험·관광 및 직거래 유통 중심인 경우 1×3차형(체험, 직거래 등), 제조·가공, 체험·관광, 직거래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1×2×3차형(복합형)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사업계획은 별지 제2호서식(신규)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경신)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서(신규·경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신청단위 [<input type="checkbox"/>] 농업인, [<input type="checkbox"/>] 개인·법인사업자, [<input type="checkbox"/>] 영농조합, [<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농업회사법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법인인 경우)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유형구분 [<input type="checkbox"/>] 1×2차형(가공), [<input type="checkbox"/>] 1×3차형(체험, 직거래 등), [v] 1×2×3차형(복합형) (농촌융복합산업) 구분 [<input type="checkbox"/>] 최초 인증 신청, [<input type="checkbox"/>] 경신(유효기간 연장) 신청
사업계획	<붙임>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 경신의 경우, 사업계획서 외의 서류는 변경 사항 있는 경우만 제출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경영체 증명서 1부(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인 경우) 3. 장공 또는 조차과 운영에 관한 규정(법인 아닌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사업계획서(신규)

I. 추진 사업의 명칭 :

II. 사업자 일반 현황(작성일 기준: . . .)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설립일	
연락처		
주소		
업종	자본금	백만원
주원료	주생산품	
매출액 및 고용 현황 *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	총 매출액: 백만원 * 농산물 생산(1차): , 농산물 가공(2차): , 농촌 체험·관광(3차)(농촌융복합산업* 관련 매출) : * 고용 현황: 총 명 * 유급종사자: 명(상시4: 명, 임시5: 명) 무급종사자: 명(가족: 명, 기타: 명)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 :	
사업장 현황 * 해당부분 <input type="checkbox"/> 체크 후 해당 면적 기입	1차	* <input type="checkbox"/> 자가생산 농장면적: m(전답) * <input type="checkbox"/>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농장면적: m(전답) * <input type="checkbox"/> 자가생산 시설면적: m(하우스 축사 기타) * <input type="checkbox"/>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시설면적: m(하우스 축사 기타)
	2차	공장면적 : m(대지 건물)
	3차	시설면적 : 체험 m ² , 음식점 m ² , 숙박 m ² , 직매장 m ² , 기타 m ² 연간(전년도) 방문객수(체험객수) : 명
특이사항		

4) 상시근로자: 1년 이상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대표자 및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계약직을 포함함)
 5) 임시 근로자 인력 산출방법: 연간 근무시간 누계 1,920시간(12개월×20일/월×8시간/일)을 1명으로 계산 (예시) 10명을 5개월간 일 10일, 일 5시간씩 고용한 경우 연간 근무시간은 2,500시간(10명×5개월×10일/월×5시간/일=2,500시간), 인월으로 환산 시 1.3명(2,500시간/1,920시간=1.3명)
 6) 인·허가, 정부지원 사항 등을 시간의 흐름 순으로 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심사 및 지원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대표자 성명 및 생년월일을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 제공하며, 제공받은 기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기간(3년) 동안 보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대표자 성명을 6차산업 홈페이지 및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기간(3년) 동안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할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심사 및 지원 사업 대상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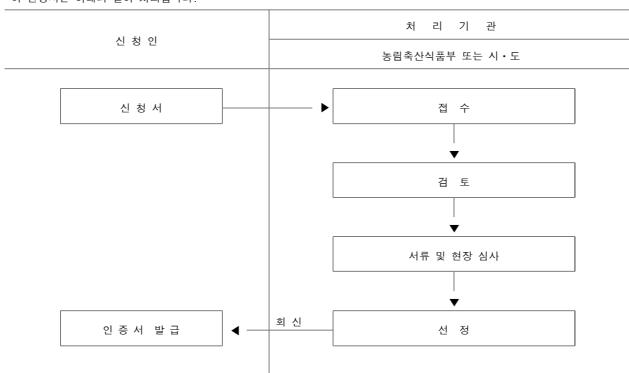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글자는 검은색으로 쓰고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신청 단위는 인증을 받으려는 주체의 유형에 따라 농업인, 개인·법인 사업자, 영농조합,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기타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주소란에는 신청인 또는 법인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 유형은 제조·가공 중심인 경우 1×2차형(가공형), 체험·관광 및 직거래 유통 중심인 경우 1×3차형(체험, 직거래 등), 제조·가공, 체험·관광, 직거래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1×2×3차형(복합형)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사업계획은 별지 제2호서식(신규)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경신)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III.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역량[사업자(사업주)의 농촌융복합산업 기본역량]

①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교육 참가실적(최근 3년간, 신청년도 포함)(26년, 25년, 24년)

교육명	년/월	장소	주최(주관)기관	참고

② 농산물 가공·체험·요리 등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격증·인증 취득 현황

자격증/인증명	발급 년/월	발급기관	참고

③ 농산물 가공·체험·요리 등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신상품개발 증명서, 특허출원 실적

증명서/특허명	발급 년/월	발급기관	참고

④ 농촌융복합산업 경진대회·품평회·박람회 등 수상실적(도단위 이상)(최근 3년간 신청년도 포함)

행사명	수상등급	주최(주관)기관	참고

IV.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실적[사업자(사업주)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추진 실적]

① 매출·수출 실적(가공, 체험, 서비스의 재료로 사용되는 농산물 포함)

구분	매출액(백만원)	수출액(\$)	비고(수출국별 수출액)
2025년(인증신청 전년도)			
2024년(인증신청 전전년도)			

② 고용 현황 (단위: 명)

구분	총 고용인원	유급종사자		무급종사자	
		상시근로자	임시근로자	가족	기타
2025년(인증신청 전년도)					
2024년(인증신청 전전년도)					

* 상시근로자: 1년 이상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대표자 및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계약직을 포함함)
 ** 임시 근로자 인원 산출방법: 연간 근무시간 누계 1,920시간(12개월×20일/월×8시간/일)을 1명으로 계산

V. 사업의 개요 및 세부계획(향후 3년간)

사업의 개요 및 추진계획

① 사업의 개요, 기본방향 및 체계, 융복합 형태
 ② 향후 3년간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의 개요, 기본방향 및 체계, 융복합 형태
 사업의 개요, 기본 방향, 추진체계, 농촌융복합산업 형태 기술: 1차·2차·3차 산업 간 연계 형태, 2차·3차 산업과 1차 산업과의 관계, 부가가치 제고 방식

2. 향후 3년간 세부 추진계획
 신상품 개발, 제품의 구체적인 판로 확보방안(직매장 활용, 온라인 판매, 체험객 유치 등), 고객 확보 노후, 홍보·마케팅 계획을 통한 매출 증대 등 계획의 독자성, 창의성, 차별성이 드러나도록 기술, 추진사업의 실시 예정 시기 및 기간 포함

지역농업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①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② 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 자원과의 연계성

1.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방식
 지역주민 고용 계획,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활동(장학금, 마을잔치 등) 계획 등에 대해 기술

2. 지역 내 관광자원, 농촌융복합산업 시설(직매장, 가공시설, 체험장 등) 활용·연계 방안
 지역 내 종합가공센터 활용, 체험농가와의 연계, 체험마을의 숙박시설 활용 등에 대해 기술

농산물 확보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증빙자료

<향후 확보 계획>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증빙자료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기 타
 기타 특이사항 자유 기술

3-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심사표(신규, 갱신)

접수번호	신청업체	
심사일자	20 . . .	심사위원 (서명)

구분	심사항목	세부지표	심사내용	배점	심사점수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농촌 융복합 산업 기반 (40)	1.사업체의 역량 (30)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초 역량 (10)	1-1.사업주(경영주)의 3년간(신청년도 포함) 관련 교육 참가 횟수	10	4회 이상	3회	2회	1회	0회	
		1-2. 최근 2년 간(신청년도 포함) 재무관리, 회계자료 작성의 성실도 (재무회계 관리,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작성 여부)	10	10	8	6	4	2		
		1-3. 가공시설, 체형장, 직매장 등 시설 구축 및 관리 정도	10	10	8	6	4	2		
	2.지역농산물 사용률(10)	지역농산물 사용 비율(10)	2.원물의 지역농산물 사용 정도 (전년도 기준)	10	비율 (%) 이상	70% 이상	65% 이상	60% 이상	55% 이상	50% 이상
경쟁력 (20)	3.경이성 및 활용성(2)	창의성, 경쟁력 (10)	3-1. 사업계획서의 독자성, 혁신성, 차별성	10	10	8	6	4	2	
		지역 내 자원과의 연계 및 활용 (10)	3-2. 지역 내 관광자원, 산업시설(직매장, 가공시설, 체험장 등)의 연계 및 활용 정도	10	10	8	6	4	2	
지역 사회 연계, 상생 (20)	4.지역과의 연계성(2)	지역 농업과의 연계성(10)	4-1. 지역농업 활성화 기여 계획	10	10	8	6	4	2	
		지역 사회와의 연계성(10)	4-2.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계획	10	10	8	6	4	2	
향후 계획 (20)	5. 계획의 타당성 (2)	계획수립의 적절성(10)	5-1. 계획 수립 내용의 적절성 (투융자계획 등)과 계획 목표의 달성 가능성	10	10	8	6	4	2	
		완성도(10)	5-2. 1차, 2차, 3차 산업 간의 융복합성	10	10	8	6	4	2	
6.가점 (8)				8	_ 점					
합 계				105	점					
심사 의견										

3-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심사표(예비)

접수번호	신청업체	
심사일자	20 . . .	심사위원 (서명)

구분	심사항목	세부지표	심사내용	배점	심사점수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농촌 융복합 산업 기반 (40)	1.사업체의 역량 (30)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초 역량 (10)	1-1.사업주(경영주)의 3년간(신청년도 포함) 관련 교육 참가 횟수	10	4회 이상	3회	2회	1회	0회	
		1-2. 최근 2년 간(신청년도 포함) 재무관리, 회계자료 작성의 성실도 (재무회계 관리,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작성 여부)	10	10	8	6	4	2		
		1-3. 가공시설, 체형장, 직매장 등 시설 구축 및 관리 정도	10	10	8	6	4	2		
	2.지역농산물 사용률(10)	지역농산물 사용 비율(10)	2.원물의 지역농산물 사용 정도 (전년도 기준)	10	비율 (%) 이상	70% 이상	65% 이상	60% 이상	55% 이상	50% 이상
경쟁력 (20)	3.경이성 및 활용성(2)	창의성, 경쟁력 (10)	3-1. 사업계획서의 독자성, 혁신성, 차별성	10	10	8	6	4	2	
		지역 내 자원과의 연계 및 활용 (10)	3-2. 지역 내 관광자원, 산업시설(직매장, 가공시설, 체험장 등)의 연계 및 활용 정도	10	10	8	6	4	2	
지역 사회 연계, 상생 (20)	4.지역과의 연계성(2)	지역 농업과의 연계성(10)	4-1. 지역농업 활성화 기여 계획	10	10	8	6	4	2	
		지역 사회와의 연계성(10)	4-2.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계획	10	10	8	6	4	2	
향후 계획 (20)	5. 계획의 타당성 (2)	계획수립의 적절성(10)	5-1. 계획 수립 내용의 적절성 (투융자계획 등)과 계획 목표의 달성 가능성	10	10	8	6	4	2	
		완성도(10)	5-2. 1차, 2차, 3차 산업 간의 융복합성	10	10	8	6	4	2	
합 계				105	점					
심사 의견										

3-5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심사표(신규)

접수번호	신청업체	
심사일자	20 . . .	심사위원 (서명)

구분	심사항목	세부지표	심사내용	배점	심사점수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농촌 융복합 산업 기반 (30)	1.사업체의 역량 (30)	경영 및 재무 관리(15)	1-2. 최근 2년 간(신청년도 포함) 재무관리, 회계자료 작성의 성실도 (재무회계 관리,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작성 여부)	15	15	12	9	6	3
		농촌융복합산업 인프라구축(15)	1-2. 농촌지역 내 관련 시설 구축 및 관리 정도	15	15	12	9	6	3
경쟁력 (20)	2.경이성 및 활용성(2)	창의성, 경쟁력 (10)	2-1. 사업계획서의 독자성, 독창성, 혁신성, 차별성, 및 수익성 정도	10	10	8	6	4	2
		지역 내 자원과의 연계 및 활용 (10)	2-2. 지역 내 관광자원 및 시설, 제품, 서비스와 지역 역사문화 등과의 연계 및 활용도, 확장성, 고품질 정도	10	10	8	6	4	2
지역 사회 연계, 상생 (30)	3.지역과의 연계성(30)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여도 (10)	3-1. 지역 공동체주민, 단체, 조직과의 연계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	20	20	15	10	5	0
		지역주민 수용성 및 지속가능성 (10)	3-2. 지역주민 수용성, 참여도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의 지속 가능성 정도	10	10	8	6	4	2
		지역주민 고용 등 농가수익 기여도(10)	3-3. 지역주민 고용 등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수익 환원, 농가 수익 기여 등	10	10	8	6	4	2
향후 계획 (20)	4. 계획의 타당성 (2)	계획수립의 적절성(10)	4-1. 계획 수립 내용의 적절성(투융자계획 등)과 계획 목표의 달성 가능성	10	10	8	6	4	2
		완성도(10)	4-2. 1차, 2차, 3차 산업 간의 융복합성	10	10	8	6	4	2
5.가점 (10)				10	_ 점				
합 계				110	점				
심사 의견									

3-6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심사표(예비)

접수번호	신청업체	
심사일자	20 . . .	심사위원 (서명)

구분	심사항목	세부지표	심사내용	배점	심사점수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농촌 융복합 산업 기반 (30)	1.사업체의 역량 (30)	경영 및 재무 관리(15)	1-2. 최근 2년 간(신청년도 포함) 재무관리, 회계자료 작성의 성실도 (재무회계 관리,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작성 여부)	15	15	12	9	6	3
		농촌융복합산업 인프라구축(15)	1-2. 농촌지역 내 관련 시설 구축 및 관리 정도	15	15	12	9	6	3
경쟁력 (20)	2.경이성 및 활용성(2)	창의성, 경쟁력 (10)	2-1. 사업계획서의 독자성, 독창성, 혁신성, 차별성, 및 수익성 정도	10	10	8	6	4	2
		지역 내 자원과의 연계 및 활용 (10)	2-2. 지역 내 관광자원 및 시설, 제품, 서비스와 지역 역사문화 등과의 연계 및 활용도, 확장성, 고품질 정도	10	10	8	6	4	2
지역 사회 연계, 상생 (30)	3.지역과의 연계성(30)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여도 (10)	3-1. 지역 공동체주민, 단체, 조직과의 연계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	20	20	15	10	5	0
		지역주민 수용성 및 지속가능성 (10)	3-2. 지역주민 수용성, 참여도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의 지속 가능성 정도	10	10	8	6	4	2
		지역주민 고용 등 농가수익 기여도(10)	3-3. 지역주민 고용 등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수익 환원, 농가 수익 기여 등	10	10	8	6	4	2
향후 계획 (20)	4. 계획의 타당성 (2)	계획수립의 적절성(10)	4-1. 계획 수립 내용의 적절성(투융자계획 등)과 계획 목표의 달성 가능성	10	10	8	6	4	2
		완성도(10)	4-2. 1차, 2차, 3차 산업 간의 융복합성	10	10	8	6	4	2
합 계				110	점				
심사 의견									

